

# 부부의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 Married Couples'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Domestic Violence Acts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김예정

교수 김득성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Kim, Yea-Jung

Professor : Kim, Deuk-S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various married couples(non-violent couples, violent couples, indicted couples) on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collect opinions on the legal treatment of indicted couples, especially on Protection Orders and criminal punishment.

The questionnaires included 242 couples residing in Pusan and 50 indicted couples in various major cities of Korea.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uples in general understood well the Domestic Violence Acts, and their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did not affect their knowledge on the Acts. Second, the attitudes of the husband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affected by whether or not they had inflicted violence on their wives. Husbands who have a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but were not arrested and indicted had negative attitudes on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They also did not want to call the police for assistance. However, they show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programs aimed at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Third, the attitudes of wives on Domestic Violence Acts were not associated with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Fourth, indicted couples felt that Protection Orders were necessary and they were willing to follow the Protection Orders set forth by public prosecutors. Victimized wives wanted another form of sentencing rather than a fine, and they wanted to have their opinions heard when their spouse was arrested and when sentencing took place.

---

▲주요어(Key Words) : 가정폭력특례법(Domestic Violence Acts), 비폭력남편(non-violent husband), 폭력남편(violent husband), 입건남편(indicted husband), 보호처분(Protection Orders),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의 가정폭력<sup>1)</sup> 실태는 1980년대 들어 가정법률상담소나 여성의 전화 등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여러

연구들(김익기·심영희, 1993; 김재엽, 1998; 변화순, 1993; 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에서 가정폭력이 타인간의 폭력 못지않게 심각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타인간 폭력과는 달리 가정폭력은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고 법적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이에 여성운동단체와 학계는 가정폭력을 사회범죄로 인식하여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관련 단체들의 노력의 결실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

---

\* 주 저 자 : 김예정 (E-mail : efood1@hanmail.net)

1) 본 논문에서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에 초점둔다.

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관해 특별 입법 조치를 취한 50여개국의 하나가 되었으며(한인섭, 1998),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범죄임이 공식화되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취지와 목적에는 피해아내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또 지속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폭력남편에 대한 고소나 체포, 구속과 같은 형사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즉 수감명령,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조항이 완비되어서 폭력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피해아내가 남편의 폭력행동을 교정할 수만 있다면 결혼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폭력남편에게 변화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호처분은 환영할만한 조치라 생각된다.

이처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인 개입수단은 마련되었지만,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부부들이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부부들이 법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부들의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특례법에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고·고소에 의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체포하여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이전에는 경찰들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찰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가정폭력특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비교적 활발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남순·장희숙·김유순, 2000). 오히려 때로는 당사자 부부가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개입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데, 폭력남편들 중에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고, 피해아내들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남편을 체포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피해아내의 빈번한 고소취하'로 나타난 점(허남순·장희숙·김유순, 2000)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부부의 경찰개입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법의 실행에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처벌법 제4조 1항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상 주로 가정내에서 발생하여 숨기기가 용이하고, 우리사회에는 사생활에 간섭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이웃이 다른 가정의 폭력을 신고하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부부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신고하는가가 경찰개입에 영향을 주므로 부부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특례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들이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원하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부부의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폭력피해 아내를 대상으로 한 조사 몇 편을 제외하고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부부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례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부부집단을 대상으로 특례법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개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폭력사건은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처분결과는 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한 가정의 유지와 해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결정에 있어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폭력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해당 가정에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가정폭력사건으로 실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형사입건부부(2)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특례법의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처리절차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부부집단(비폭력부부, 폭력경험부부, 입건부부)별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본다. 둘째, 입건부부를 대상으로 특례법 중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처리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정책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집단별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부부집단별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태도(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 본인 가정과 이웃가정의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및 권유)는 어떠한가?
3. 입건부부의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처리절차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 2. 용어의의

### 1)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

일반부부(비폭력부부와 폭력부부)의 경우, 1998년 7월부터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어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 2) 이하에서 '입건부부'라고 약칭한다.

## 2)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태도

다양한 부부집단별(비폭력부부, 폭력부부, 입건부부)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개입, 가정폭력신고 및 예방차원의 가정폭력 프로그램 참여 및 권유에 관한 입장을 의미한다.

## 3) 가정폭력특례법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견해

입건부부가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처리절차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정의가 합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가정폭력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폭력의 피해대상자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시대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그 기준과 범위가 달라졌고 또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김승권·조애저, 1998).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2조 2항에 의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뿐만 아니라 계부모와 자의 관계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관계도 포함하고 있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기타 친족관계에 있는자' 및 '약혼 또는 교제중이거나 교제관계에 있었던 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곽배희, 개정안 제2조 제2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그러나 '남편의 아내폭력'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심각하여 가정폭력특례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된 만큼,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폭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1항과 3항에서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서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가 법적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적극적인 협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무시나 욕설 등의 심리적·언어적 폭력은 제외되며, 신체적 폭력은 신체에 식별되는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에는 성적 폭력을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으나 성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체적 폭력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이 되는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하여 심리적·언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이 수반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2. 가정폭력특례법의 입법배경 및 특징

가정폭력특례법을 제정할 당시 이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반대론이 강하였다. 반대론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그 당시 법만으로도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당시 형법과 모자복지법에 의거해서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여성과 자녀를 일시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으므로, 따로 법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법규에 따라 대처하는 것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경찰이 타인간의 폭력과는 달리 아내가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게 되어 신고할 경우 '부부싸움'이나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형법에 상해죄 규정이 있으나마나이다. 둘째, 신고로 인해 피해아내는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후환이 두려워서, 제3자인 경우에는 '사생활 불가침'이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에서 '남의 사생활'에 끼어들게 됨으로써 감수하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셋째, 피해아내는 폭력남편을 신고할 경우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이혼까지도 감수해야 할 지 모른다는 점에 큰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판사나 조정위원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아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무리한 합의를 유도하며 재판을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해 주어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게까지 하여 결국 피해아내를 사회적·법적 보호로부터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이 적극적인 태도로 개입해서 피해아내를 도와줄 수 있으며,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남편의 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가정폭력특례법<sup>3)</sup>의 제정은 먼저, 가정폭력은 '사생활의 이름으로' 방치되고 국가개입을 자제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범죄행동임이 선언되었다. 이로써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신고·고소·고발에 관한 특례에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처벌법 제4조 1항)을 두어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건처리 절차상의 특례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처벌법 제5조)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아내가 신고로 인한 신체상 위협이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2003년 3월 19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특례법은 법의 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추가하였고, 검사가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위한 조치가 보완되었다.

셋째로, 가정폭력특례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규정(처벌법 제9조)은 특례법 이전에는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불기소로 처리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중간적 제재형태인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처분은 처분미상으로 처리되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그 내용에 수강명령,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어 폭력남편의 폭력성을 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은 피해아내를 비롯한 가정폭력 목격자들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기를 주며, 경찰의 개입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폭력남편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폭력교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으로 인해 별거,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부들에게 유익한 법이 될 것이다.

### 3.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경찰, 상담원,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구타당한 아내를 대상으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결과 중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경찰의 대응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 경찰연수원과 K도의 경찰연수 기관에 연수를 받은 209명의 현직경찰 2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허남순·장희숙·김유순, 2000)에서 조사대상의 60%정도는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나 약 7%는 전혀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기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거나, 남편에게 충고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충고하여 피해자를 위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찰은 아내구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부상담(29%), 보호관찰소에서 상담(18%), 치료시설 수용(15.8%), 상담기관에서 상담(1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옥수(1999)의 연구에서 경찰들(64명)은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것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인식통로는 직업상 관련된 연수나 교육을 통한 방법이 80.6%를 차지하였다. 이웃이나 가족, 친척 중에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42.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폭력 발생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 출동하여 개입한다'에 68.8%가, '상황에 따라 출동여부를 결정한다'에 31.2%가 응답하였다.

전국에서 파악된 상근 가정폭력상담원 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유순·허남순·장희숙, 2000)에서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

들이 가정폭력특례법에 관한 자세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내구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가 강경한 상담원들도 가해자 조치에 있어서는 '체포경고' 등의 가벼운 조치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들은 남편의 구타행동을 고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상담기관에서 상담(46.9%), 보호관찰소에서 교육(21%), 부부상담(11.1%)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실무자(상담원 34명, 사회복지사 31명, 경찰 39명, 의료기관 종사자 28명, 사회복지전문요원 8명 총 140명)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특례법의 인식을 조사(유만수, 2000)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법을 알고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집단이 아내구타에 대해 왜곡된 신념, 즉 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고 아내구타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으며 가정내 사적인 부부문제에 대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거나 피해자센터에 일시 거주한 239명의 구타당한 아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장희숙·허남순·김유순, 2001)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31.4%만이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많은 아내들(68.6%)은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41.8%의 아내들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어 비교적 높은 신고율을 보여주었는데, 아내들의 경찰신고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심한 폭력과 법에 관한 인식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내들의 신고율은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당한 아내들이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변화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며, 이들이 원하는 폭력남편에 대한 처벌은 접근금지나 사회봉사명령보다는 남편의 심리와 행동의 변화를 위한 가해자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의 면담기록부에 기록된 사례(2000년~2002년 2월, 650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박혜영, 2002) 폭력을 당한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외부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적었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사건처리가 미흡했던 점과 경찰이 집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주어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경찰, 가정폭력상담원 및 가정폭력관련기관의 실무자들은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법의 상세한 내용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타당한 아내들은 60% 이상이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 및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실무자들 중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식이 많을수록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구타당한 아내들의 경우도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잘 알고 지식이 많을수록 가정폭력 신고율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과 상세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선기관의 실무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수,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해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경찰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실무자들 그리고 구타당한 아내들은 폭력남편에 대한 처벌로 가해자 상담을 선호하였다. 이는 가정보호사건이 제정된 법적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되며,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4.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상 문제점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검사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불기소처분 가운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제시가 없다는 점이다. 단지 제9조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하고 어떤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할 때 합리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형사처벌을 해야 할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과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과 폭력행위가 상습적이고 주기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 발생시부터 법의 처분 결정과정, 법의 집행과정까지 그 단계별로 시행주체가 다르고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시일을 요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김재엽 외, 1999). 특히 재판시일이 길어지는 것은 적은 판사인원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행정적 이유가 있다(전성휘, 1996).

셋째, 가정폭력의 형사처벌 처리절차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요구나 의견이 반영될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들어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형부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 가해자의 구속결정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여 사법인의 법적 처분 판단에 참고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부부와 전국 6개 도시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형사입건된 부부이다. 가

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은 일반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조사시점에서 입건부부는 이미 특례법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특례법에 대한 태도는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은 입건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부부는 2000년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부산시 6개구(남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에 거주하는 부부를 유의표집하였으며, 총 300쌍(6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부실기재나 부부가 아닌 사람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42쌍(484명)이 최종 연구에 사용되었다. 입건부부는 2000년 3월에서 9월에 걸쳐 전국 7개 도시에 소재한 검찰청(서울: 본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북부지청, 서부지청, 의정부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표집되었는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에 협조를 하기로 한 폭력사건 담당자가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된 부부에게 설문지를 주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10쌍(620명)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사건담당자의 업무과다와 폭력가해자의 소환에 불응, 부실기재 등의 사유로 총 50쌍(100명)의 설문지가 연구에 최종으로 사용되었다.

일반부부 중 폭력척도 상 폭력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부부를 '비폭력부부'로, 폭력척도의 한 문항이라도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한 부부를 '폭력부부'라고 명명하였다.

<표 1> 비폭력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남편 (n=161)	아내 (n=177)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대 이하	62(38.8)	79(45.7)	직업	일반전문기술직	32(20.3)
	40대	54(33.8)	65(37.6)		고위전문직	7(4.4)
	50대 이상	44(27.5)	29(16.8)		50만원미만	0(0)
교육 수준	초등졸	2(1.3)	7(4.0)		50-100만원	9(5.7)
	중졸	10(6.3)	24(13.6)	가정 수입	101-150만원	32(20.1)
	고졸	49(30.8)	75(42.6)		151-200만원	29(18.2)
	대졸	87(54.7)	66(37.5)	201-250만원	29(18.2)	
	대학원졸	11(6.9)	4(2.3)	251-300만원	22(13.8)	
직업	무직,정년퇴직	7(4.4)		301-400만원	28(17.6)	
	고용직,기능직,노무직	5(3.2)		401만원이상	6(3.8)	
	판매/서비스직	6(3.8)		결혼 기간	10년 이하	56(35.4)
	숙련/반숙련직,생산직	25(15.8)			11-20년 이하	39(24.7)
	소규모자영업	22(13.9)		21-30년 이하	53(33.5)	
	일반사무직,공무원	54(34.2)		31년 이상	10(6.3)	

&lt;표 2&gt; 폭력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남편 (n=81)	아내 (n=65)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대 이하	19(24.1)	16(25.0)	직업	일반전문기술직	6(7.5)	
	40대	29(36.7)	30(46.9)		고위전문직	2(2.5)	
	50대 이상	31(39.2)	18(28.1)	빈도	50만원미만	1(1.2)	
교육 수준	초등졸	2(2.5)	7(10.9)		50-100만원	10(12.4)	
	중졸	11(13.6)	16(25.0)		101-150만원	19(23.5)	
	고졸	48(59.3)	35(54.7)		가정 수입	151-200만원	17(20.9)
	대졸	20(24.7)	6(9.4)		201-250만원	10(12.4)	
	대학원졸	0(0)	0(0)		251-300만원	7(8.4)	
직업	무직,정년퇴직	10(12.5)			301-400만원	10(12.4)	
	고용직,기능직,노무직	5(6.3)			401만원이상	7(8.6)	
	판매/서비스직	6(7.5)			결혼 기간	10년 이하	18(22.2)
	숙련/반숙련직,생산직	20(25.0)				11-20년 이하	12(14.8)
	소규모자영업	14(17.5)		21-30년 이하	48(59.3)		
	일반사무직,공무원	17(21.3)		31년 이상	3(3.7)		

&lt;표 3&gt; 입건부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남편 (n=50)	아내 (n=50)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대 이하	17(34.0)	24(48.9)	직업	일반전문기술직	3(6.1)	
	40대	23(46.0)	21(42.9)		고위전문직	0(0)	
	50대 이상	10(20.0)	4(8.2)	빈도	50만원미만	8(16.0)	
교육 수준	초등졸	10(20.0)	12(24.0)		50-100만원	15(30.0)	
	중등졸	11(22.0)	7(14.0)		101-150만원	14(28.0)	
	고등졸	18(36.0)	22(44.0)		가정 수입	151-200만원	6(12.0)
	대졸	10(20.0)	7(14.0)		201-250만원	2(4.0)	
	대학원졸	1(2.0)	2(4.0)		251-300만원	3(6.0)	
직업	무직,정년퇴직	7(14.3)			301-400만원	0(0)	
	고용직,기능직,노무직	8(16.3)			401만원이상	2(4.0)	
	판매/서비스직	8(16.3)			결혼 기간	10년 이하	25(52.1)
	숙련/반숙련직,생산직	8(16.3)				11-20년 이하	13(27.1)
	소규모자영업	10(20.4)		21-30년 이하	7(14.6)		
	일반사무직,공무원	5(10.2)		31년 이상	3(6.2)		

비폭력부부의 가계 수입은 101-150만원이 20.1%, 150-200만원과 201-250만원이 각각 18.2% 순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일반사무직, 공무원이 34.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반전문기술직 20.3%, 숙련/반숙련직, 생산직이 15.8% 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대졸 54.7%, 고졸 30.8% 순이고, 아내의 경우 고졸 42.6%, 대졸 37.5%이었다. 평균연령은 남편이 43세, 아내가 40세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16년이었다.

폭력부부의 가계수입은 101-150만원이 23.5%, 151-200만원이 20.9% 순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숙련/반숙련직, 생산직이 25.0%, 일반사무직, 공무원이 21.3%, 소규모자영업이 17.5%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고졸 59.3%, 대졸 24.7% 순이었고, 아내의 경우 고졸 54.7%, 중졸 25.0%이었다. 평균연령은 남편이 45세, 아내가 44세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19년이었다.

입건부부의 가계수입은 50-100만원이 30.0%, 101-150만원이 28.0%, 151-200만원이 12.0% 순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소규모자영업이 20.4%, 숙련/반숙련직, 생산직이 16.3%, 판매/서비스직, 이 16.3%, 고용직, 기능직, 노무직이 16.3% 순이었다. 학력은 남편의 경우 고졸 36.0%, 중졸 22%, 대졸 20% 순이었고, 아내의 경우는 고졸 44.0%, 초등졸 24.0%, 대졸과 중졸이 각각 14.0%이었다. 평균연령은 남편이 42세, 아내가 40세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13년이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 부부집단은 연령에서는 40대 초·중반에 속하며, 결혼기간은 10-20년 이하인 가정에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부의 학력, 가계수입과 남편의 직업면에서 볼 때 비폭력부부는 중간 혹은 그 이상의 계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입건부부가 폭력부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소 낮기는 했지만, 두 집단은 비폭력부부에 비해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중간 이하의 계층에 속한다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세 부부집단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 2. 조사도구

일반부부에서 폭력부부와 비폭력부부를 구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남편이 아내에게 한 신체적 폭력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신체적 폭력을 조사하였다. 척도는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의 Conflict Tactics Scale(CTS)Ⅱ를 김예정·김득성(1999)이 번안한 것과 Margolin, John 및 Foo(1998)가 사용한 가정폭력지표(DCI: Domestic Conflict Index)를 참고로 문항내용을 수정하여 총 8문항(4)을 사용하였다. 응답범

- 4) 1. 나는 아내에게 가구집기를 집어던졌다. 2. 나는 아내의 머리카락이나 팔 또는 몸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3. 나는 아내를 주먹으로 한두대 때렸다. 4. 나는 아내의 뺨을 때렸다. 5. 나는 아내를 담배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가위 등 흉기로 찌르거나 다치게 하였다. 6. 나는 아내의 목을 졸랐다. 7. 나는 아내를 손·발·가구집기 등으로 마구 두들겨 팼다. 8. 나는 아내를 발로 한두번 차거나 짓밟았다.

주는 전혀없음(1), 1년에 1-2번(2), 1년에 3-4번(3), 한달에 1번(4), 한달에 2-3번(5), 일주일에 1번(6), 일주일에 2-3번(7), 거의 매일(8)의 8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91$ 이다.

일반부부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일반부부와 입건부부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 가정폭력(본인가정/이웃가정)의 신고의향,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권유의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입건부부에게 보호처분(수감명령, 상담·치료위탁)의 필요성 및 처리절차와 가정폭력의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입건부부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기술분석이 실시되었다. 폭력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부부집단별 특례법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에 대한 인식

<표 4> 일반부부의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에 대한 인식

범 주	비폭력남편	폭력남편	비폭력남편의 아내	폭력남편의 아내
법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7(16.8)	18(22.2)	35(20.0)	14(21.5)
법 시행사실을 알고 있었다	134(83.2)	63(77.8)	140(80.0)	51(78.5)
합계	161(100)	81(100)	175(100)	65(100)
	$\chi^2 = 2.7$		$\chi^2 = 0.7$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일반부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의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약 80%의 부부가 '법 시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실무자(68.4%, 유만수, 2000)와 구타당한 아내(31.4%, 장희숙·허남순·김유순, 2001)의 인식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일반부부들의 특례법에 대한 높은 인식에는 법률 및 행정기관, 민간상담기관의 홍보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표 5-1> 남편의 경찰개입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남편	폭력남편	입건남편
경찰의 개입은 당연하다	56(35.4)	12(14.8)	6(12.0)
경우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94(59.5)	58(71.6)	37(74.0)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8(5.1)	11(13.6)	7(14.0)
합 계	158	81	50
	$\chi^2 = 21.2^*$		

\*  $p < .001$

<표 5-2> 아내의 경찰개입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아내	폭력남편의 아내	입건남편의 아내
경찰의 개입은 당연하다	62(35.2)	16(24.6)	17(34.7)
경우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109(61.9)	47(72.3)	29(59.2)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5(2.8)	2(3.1)	3(6.1)
합 계	176(100)	65(100)	49(100)
	$\chi^2 = 3.9$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가정폭력사건이 신고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개입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해 남편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편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폭력남편은 경찰개입이 당연하다(35.4%)고 응답한 반면에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각각 13.6%, 14%)와 경우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각각 71.6%, 74%)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강하게 반대하였다. 한편 아내들은 경우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당연하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 경험여부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은 비폭력남편보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남편들은 아내와의 다툼 과정에 폭력이 오갈 수 있으며 가정폭력을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사회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세 부부집단에게 개입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질문한 결과, 남편들(비폭력남편 94명, 폭력남편 58명, 입건남편 37명)은 폭력이 심한 경우(각각 63.7%, 72.2%, 79.4%)가 가장 많았고, 가족이 신고한 경우(36.3%, 22.2%, 17.7%)가 그 다음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소수의 응답이 있었다. 아내들(비폭력아내 109명, 폭력남편의 아내 47명, 입건남편의 아내 29명)의 경우도 폭력이 심한 경우(68.6%, 65.2%, 72.0%)와 가족이 신고한 경우(30.4%, 30.3%, 24.0%)의 순으로 남편들과 유사하였다.

이상에서 부부들이 생각하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란 심한 폭력이 발생해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때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부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전까지는 가정폭력을 부부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본다는 점과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상황이 심각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건정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폭력남편과 그 피해아내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받는 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비폭력남편은 일반폭력사건과 다름바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한다(40.9%)고 응답한 반면에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은 단순한 부부싸움에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각각 43.2%, 35.4%)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에 대한 남편들간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내들은 경우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일반폭력사건과 다름바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에 주로 응답하였다.

<표 6-1> 남편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남편	폭력남편	입건남편
일반폭력사건과 다름바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65(40.9)	20(24.7)	10(20.8)
경우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53(33.3)	26(32.1)	21(43.8)
단순한 부부싸움에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41(25.8)	35(43.2)	17(35.4)
합 계	159(100)	81(100)	48(100)
	$\chi^2 = 13.4^*$		

\* p< .001

<표 6-2> 아내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아내	폭력남편의 아내	입건남편의 아내
일반폭력사건과 다름바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86(50.0)	25(38.5)	16(33.3)
경우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56(32.6)	30(46.2)	24(50.0)
단순한 부부싸움에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30(17.4)	10(15.4)	8(16.7)
합 계	172(100)	65(100)	48(100)
	$\chi^2 = 7.4$		

이상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의 경험여부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은 비폭력남편보다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세 부부집단에게 개입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를 질문한 결과, 남편들은 심한 폭력인 경우, 이웃에 피해(물의)를 준 경우, 자녀에게까지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응답하였고, 아내들은 일방적 폭력이 가해질 때, 폭력이 심해 위협에 처할 때, 정신질환이 있을 때, 습관성일 때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부부들이 생각하는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을 수 있는 경우란 폭력이 상습적이고 심한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많은 부부들은 심하지 않는 가정폭력은 일반폭력사건과 달리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특별법에는 일단 폭력이 신고되어야만 개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고가 잘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에 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7-1> 남편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남편	폭력남편	입건남편
본인가정 신고하겠다	109(69.8)	43(53.8)	24(54.6)
신고하지 않겠다	47(30.1)	37(46.3)	20(45.5)
합 계	156(100)	80(100)	44(100)
	$\chi^2 = 7.4^*$		
이웃가정 신고하겠다	125(80.1)	48(60.0)	22(50.0)
신고하지 않겠다	31(19.9)	32(40.0)	22(50.0)
합 계	156(100)	80(100)	44(100)
	$\chi^2 = 21.3^{**}$		

\* p< .05 \*\* p<.001

<표 7-2>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아내	폭력남편의 아내	입건남편의 아내
본인가정 신고하겠다	139(80.4)	48(73.9)	30(73.2)
신고하지 않겠다	34(19.7)	17(26.2)	11(26.8)
합 계	173(100)	65(100)	41(100)
	$\chi^2 = 1.7$		
이웃가정 신고하겠다	142(81.6)	49(75.4)	30(75.0)
신고하지 않겠다	32(18.4)	16(24.6)	10(25.0)
합 계	174(100)	65(100)	40(100)
	$\chi^2 = 1.6$		



먼저 본인가정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의사를 살펴보면 비폭력남편은 신고하겠다(69.8%)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은 신고하지 않겠다(각각 46.3%, 45.5%)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웃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신고 의사에서 비폭력남편은 신고하겠다(80%)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은 신고하지 않겠다(각각 40%, 50%)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상에서 남편들이 가정폭력을 행한 경험은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들은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73~80%를 차지해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입건남편 아내의 높은 신고의사는 입건부부의 폭력사건 대부분이 피해아내의 신고<sup>5)</sup>에 의해 인지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을 당한 아내들은 경찰 신고 등 외부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적었고(박혜영, 2002), 구타당한 아내의 41.8%만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었던 것(장희숙·허남순·김유순, 2001)으로 미루어 볼 때, 신고하겠다는 의사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부부 중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부부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본인가정의 경우는 본인가정에 그런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남편과 아내 둘다 가장 많이 들었고, 부부간 대화로 해결가능하다는 두 번째로 꼽았으며, 가정사정<sup>6)</sup>이니까, 부끄러워서(사회적 체면손상)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이웃가정의 폭력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기 싫다는 남편과 아내 모두 가장 많이 들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 가정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이웃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유와 정도를 모르므로 등의 응답이 있었다. 입건부부 중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부부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본인가정의 폭력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사생활이니까, 될 수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낫다, 근본적인 해결은 부부가 해야 하니까, 신고하면 오히려 더 큰 파탄만 초래할 뿐이니까 등 이었고, 이웃가정의 폭력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이웃가정 사정<sup>7)</sup>이니까, 사건정황도 모르고 선불리 남의 일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등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부부들은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로 개별가정이 해결해야 하며, 제3자가 개입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권유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가정내 폭력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최선

책이므로, 이에 대한 부부들의 호응도를 알아보았다. 부부들에게 거주지 근처에 있는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본 결과 남편들의 50%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폭력발생 후 사후수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에 의한 강제적인 개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내들 역시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기에 응답한 경우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아내들도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1> 남편의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권유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남편	폭력남편	입건남편
있 다	85(54.5)	38(48.1)	24(50.0)
없 다	20(12.8)	14(17.7)	10(20.8)
모르겠다	51(32.7)	27(34.2)	14(29.2)
합 계	156(100)	79(100)	48(100)
$\chi^2=2.5$			

<표 8-2> 아내의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권유에 대한 태도

범 주	비폭력아내	폭력남편의 아내	입건남편의 아내
있 다	110(62.9)	35(53.9)	28(65.1)
없 다	13(7.4)	4(6.2)	2(4.7)
모르겠다	52(29.7)	26(40.0)	13(30.2)
합 계	175(100)	65(100)	43(100)
$\chi^2=2.8$			

2. 가정폭력특례법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견해

가정폭력특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폭력당사자를 위해 보다 빠르고 만족스러운 사건처리를 위한 형사정책 상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가정폭력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입건부부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수감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필요성과 처리절차 및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다.

1)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처리절차

수감명령의 경우, 검사의 보호처분이 있을 때 본인의 동의하

5) 입건된 경위를 보면 총 50사례 중 아내의 신고가 33사례(66%), 주민의 신고가 9사례(18%), 가족의 신고 4사례(8%), 기타 4사례(8%)로 나타났다.

에 이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남편의 52%, 아내의 61.2%를 차지하였으며, 재판하여 판결에 의해 이행한다는 의견과 아예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상담 및 치료위탁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검사의 보호처분이 있을 때 본인의 동의하에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재판에 의해 이행한다는 의견과 아예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표 9>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처리절차에 대한 견해

내 용	응 답 범 주	남편	아내
수강명령	불필요하다	11(22.0)	6(12.2)
	검사의 보호처분이 있을 때 본인의 동의하에 이행한다	26(52.0)	30(61.2)
	재판하여 판결에 의해 이행한다	13(26.0)	13(26.5)
	합 계	50(100)	49(100)
상담·치료위탁	불필요하다	9(18.4)	6(12.0)
	검사의 보호처분이 있을 때 본인의 동의하에 이행한다	28(57.1)	33(66.0)
	재판하여 판결에 의해 이행한다	12(24.5)	11(22.0)
	합 계	49(100)	50(100)

이상의 결과에서 대다수의 입건부부는 폭력행동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필요로 하며, 좀 더 신속한 법의 집행을 위해 검사의 제안이 있고 본인이 동의한다면 굳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형사처벌의 필요성

① 벌금형의 필요성

<표 10> 벌금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응 답 범 주	남편	아내
당연하다	10(20.4)	10(20.4)
재판받는 것보다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으면 한다	20(40.8)	13(26.5)
가정의 부담이 되므로 벌금형보다 다른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	19(38.8)	26(53.1)
합 계	50(100)	49(100)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벌 중 벌금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남편은 벌금형을 선호하는 입장과 가정의 부담이 되므로 다른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비슷하였으며, 아내의 경우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자신에게 가해질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아내가 신고의 경우 아내에 대한 미움으로 벌금형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판결을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내도 경제적 이유로 벌금형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입건부부 가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폭력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경우 가정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피해아내는 벌금마련을 위한 심적, 물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폭력남편에게 벌금을 내게함으로써 자신의 폭력행동에 대해 댓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폭력행동을 교정하려는 의지를 유도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벌금형의 처벌은 폭력가해자와 피해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로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많은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재희, 2003).

② 당사자 합의시 형사처벌의 필요성

<표 11> 당사자 합의시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응 답 범 주	남편	아내
합의한 경우 처벌해선 안 된다	43(86.0)	37(74.0)
경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4(8.0)	10(20.0)
경우에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	3(6.0)	3(6.0)
합 계	50(100)	50(100)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당사자간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는 경우 처벌여부에 대한 부부의 견해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부부는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고, 아내는 '경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일부 응답하였다.

부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남편을 구속하거나 형을 집행하여 가정을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하거나 가정을 파탄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례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정폭력특례법은 폭력남편을 무조건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폭력으로 고소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으로 폭력남편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된다.

③ 구속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남편은 '가족유지를 위해 구속은 절대 안 된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우에 따라 구속할 수 있다'에 응답하였다. 반면 아내는 '가족유지를 위해 구속은 절대 안 된다'에 응답한 비율과 '경우에 따라 구속할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동일하였다.

&lt;표 12&gt;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응답범주	남편	아내
당연하다	3(6.1)	6(12.0)
경우에 따라 구속할 수 있다	18(36.0)	22(44.0)
가족유지를 위해 구속은 절대 안된다	29(59.2)	22(44.0)
합계	50(100)	50(100)

이상에서 아내는 남편의 구속으로 가족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한편 남편의 구속으로 폭력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고 폭력남편의 신변에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가족의 해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구속에 대한 아내의 결정은 가정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기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하여 남편의 구속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④ 가정폭력 전과의 취급 및 관리

&lt;표 13&gt; 가정폭력 전과의 취급 및 관리에 대한 견해

응답범주	남편	아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11(21.6)	22(44.0)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19(38.0)	12(24.0)
가정폭력의 전과가 기록되어선 안 된다	20(40.0)	16(32.0)
합계	50(100)	50(100)

현재 수사기관 및 법원·검찰은 가정폭력사건을 일반폭력사건과 따로 분리해 취급하고 있지 않다. 즉 범죄기록 분류에서 폭력가해자가 일반폭력 피의자인지 아니면 가정폭력 피의자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폭력전과도 따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입건부부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일반폭력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관리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남편의 경우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기록되어서는 안된다'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8%였고, 아내의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44%, '가정폭력의 전과가 기록되어선 안 된다' 32%,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24%였다.

여기서도 아내의 양가감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즉 죄의 경중면에서 가정폭력을 일반폭력보다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전과)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특례를 정한 만큼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독립된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축적된 자료와 정보는 이들 가해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구성과 제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들의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며, 부부의 폭력경험유무와 특례법에 대한 인식간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둘째,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남편들의 태도는 아내에 폭력을 행한 경험과 관련성이 있었다. 즉 폭력남편과 입건남편은 비폭력남편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 가정폭력의 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및 권유에서는 남편들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아내들의 태도는 남편으로부터 당한 폭력경험과 관련성이 없었다. 즉 아내들은 가정폭력 신고와 가정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및 권유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 가정폭력사건으로 체포·조사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넷째, 입건부부들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검사의 제안이 있다면 재판받지 않고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입건남편의 아내들은 벌금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는 남편을 처벌하기 원치 않았으며, 본인의 가족유지의 의사에 따라 남편의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원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폭력사건보다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되지만 전과는 남지 않기를 원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몇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 부부나 그렇지 않은 부부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장희숙·허남순·김유순, 2001)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가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와 가정폭력의 경찰신고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는 특례법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둬으로써 가해자는 폭력을 억제하도록 피해자는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례법의 중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TV 공익광고 활용하기, 드라마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사례 다루기와 특례법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남편들은 부부간 폭력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가정폭력은 부부가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사회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해자인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부부관

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남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개입이 요구된다. 즉 심하지 않은 폭력이라도 타인간에 발생했다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듯이, 심하지 않은 폭력이라도 아내를 향한 폭력은 엄연히 범죄행동이며 따라서 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부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 아닌 이성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폭력예방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한 남편들은 거주지 근처에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아내들의 다소 미온적인 태도는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여성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가정환경, 사회적 체면, 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 경찰의 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아내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은 개별가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며, 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임을 주시시키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까지 타인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식이 미비한 우리 현실에서는 폭력피해 당사자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홍보처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TV나 언론을 통해 가정폭력 신고시 이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타당한 아내들이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수동적 태도와 사건처리가 미흡한 점이 불만(박혜영, 2002)이라고 제기된 만큼, 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적절한 처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수행결과에 대해 고가반영, 포상 등으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동기를 높이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입건부부의 결과에 기초해 형사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건부부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검찰과 법원은 폭력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력남편의 행동을 교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자 한 특례법의 취지와 남편의 폭력행동이 교정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한 피해아내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의 보호처분이 있을 때 폭력남편은 자발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부부가 동의한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보호처분이 이행되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 최종처분을 내려 판사에게 보내게 되면 특별히 중하고 복잡한 사건이 아닌 한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재판받는 한

단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단축시키고, 가해자에 대한 빠른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형사처벌에 있어 피해아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벌금형을 꺼려하며, 폭력남편과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을 원치 않고, 남편의 구속으로 가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즉 피해아내가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원하는 경우는 남편의 신변이나 사회생활과 가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아내의 의사를 법적 처분판단에 반영하여 일단 보호처분을 과하여 폭력남편이 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한 후 그 수행결과에 기초해 형사처벌 여부를 다시 재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의 현황과 처분내용, 폭력남편의 처분 수행결과 등을 일반폭력사건과 독립된 절차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향후 서비스와 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한다면 사법인이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지 판단함에 있어 타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대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특례법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의 일반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접수 일 : 2004년 09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9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2월 10일

#### 【참 고 문 헌】

- 김승권·조애저(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익기·심영희(1993).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유순·허남순·장희숙(2000). 가정폭력 상담원의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연구. **사회복지**, 144호, 166-185.
- 김예정·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0호, 27-42.
- 김재엽(1998).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5권 8호, 133-155.
- 김재엽·최선희·장희숙·이근후·이명숙·김기환·박상언(1999). **한국가정폭력 실체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곽배희(2003).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기념토론회. 가족위기-울타리안의 폭력. **여성**, 423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4-18.
- 박혜영(2002). **가정폭력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 관한 연구 - 가정폭력상담내용분석을 통하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옥수(1999). 아내학대에 관한 의식 및 태도 연구-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희(2003).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기념토론회. 가족위기 - 율타리안의 폭력. 여성, 423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8-19.
- 이택규(2000). 대한민국 신법전. 법률신문사.
- 유만수(2000). 성장기 부부폭력관찰경험, 성역할 인식, 가정폭력방지법 인지정도가 아내구타에 대한 왜곡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정폭력관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허남순·김유순(2001).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7호, 231-254.
- 전성휘((1996).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에 관한 연구-아내구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기사. 2004년 5월 12일자 18면.
- 한국여성개발원(1993). 한국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체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 한인섭(1998). 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296-318.
-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 2호, 277-320.
- 허남순·장희숙·김유순(2000).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태도 및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호, 299-324.
- Margolin, G., John, R.S., & Foo, L.(1998). Interactive and unique risk factors for husband's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of their wives. *J. of Family Violence*, 13(4), 315-344.
- Straus, M.A., & Hamby, S.L., Boney-McCoy, S., &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II):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 of Family Issues*, 17(3), 283-316.